



경기도교육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[중요] 2025학년도 학생선수 인정 범위, 훈련 및 대회 참가 지침 알림

1. 관련

가.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2조의4, 제11조,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, 「경기인등록규정」 (24.12.2.)

나.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-596(2025.2.13.), -1391(2025.3.24.)

다. 체육건강교육과-1442(2025.3.28.)

2. 2025학년도 「학생선수 인정 범위, 훈련 및 대회 시 출결처리 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경기도 종목별 단체에서는 향후 훈련 또는 대회 추진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(개인)학생선수 인정 범위: ①, ②에 해당할 경우에만 (개인)학생선수로 인정

①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

②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(대한체육회)와 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

- * 대한(장애인)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로서 정회원, 준회원, 인정단체까지만 인정
- * 「국민체육진흥법」 및 「경기인등록규정」에 의거 '전문체육'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팀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하며, '생활체육' 및 '동호인부'에 등록된 경우는 불인정
(예시) '대한축구협회'에 등록된 '선수'라도 등록 팀이 '전문 축구'일 경우에만 학생선수로 인정하며, '동호인 축구'일 경우 학생선수로 불인정한다.
- * (개인)학생선수가 아닐 경우(①, ②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)
 - 법령상 학생선수가 아님으로 학기 초 (개인)학생선수 등록과정이 필요하지 않음
 - 학생선수 인정 범위에 따른 (개인)학생선수 대상이 아닐 경우 및 관련 대회가 동호인부, 생활체육 목적의 대회일 경우 '학교장확인서' 발급 및 '수업결손에 따른 보충 학습' 대상이 아님.

나. 학생선수 출결 지침(근거: 2025 경기도 초·중·고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)

- 1)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생선수가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해 결석한 경우,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교생활 참여를 위해 초등학교 20일, 중학교 35일, 고등학교 5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함.
- 2) 다만, 학생선수가 ①국가대표(꿈나무, 청소년대표, 국가대표후보 포함)로서 국제대회 및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, ②전국(소년)체육대회(지역 예선 포함)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초등학교 20일, 중학교 35일, 고등학교 50일을 초과하여 허용 가능함.

※ 대한체육회(대한장애인체육회)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(기간, 장소, 명단 명시 등)에 근거하여 처리함. 끝.

경기도교육감



수신자 경기도 종목별 단체

★장학사 권형 학생체육담당 체육건강교육 2025.03.31.
장학관 이길한 과장 김동권

협조자 장학사 도재영

시행 체육건강교육과-1537 (2025. 03. 31.) 접수 M00013959170 (2025. 4. 9.)

우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8 / http://

전화번호 031-693-6292 팩스번호 031-248-2119 / fellcon@korea.kr / 대국민공개

청렴은 교육의 기본가치입니다.